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가. 제안이유

-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를 보조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영세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정기적금 가입의무를 폐지하고 정기적금 연체시 임대해지 조항 폐지 (안 제6조, 제8조제1항)
-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 관련사항 개정(안 제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보조금액의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지금 700만원입니다.
○ 정기적금 월 8만원 들도록 한 것은 700만원 환수대책으로 한 것인가요? 또 환수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 네, 그렇습니다. 환수대책은 동조제7조에 주택임대차 계약할 때는 관할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보자는 물적담보, 인후보증 등이 불가한데 입주세대의 임대보증금 환수를 못 할 시는 동장이 책임지는가요?	○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동장이 보증금을 받아서 환수 조치합니다.
○ 구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생활보호법에 자치단체 생활보호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5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세대를 선정하여 주택임대를 보조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조항을 폐지 및 완화하여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 생활 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

□ 주요골자

- 영세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정기적금 가입의무를 폐지하고 정기적금 연체시 임대해지조항 폐지(안 제6조, 제8조제1항)
-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 관련사항 개정(안 제5조)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생활보호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입주세대 선정) ①구청장은 입주세대 신청 시 세대의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여 <u>구 생활보호 심의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한다.	제5조(입주세대 선정) ① <u>시장</u> <u>생활보호위원회</u>

②(생략)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정기적금 가입) ①입주세대는 전세금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저축기간 : 5년
- 2. 납입금액 : 80,000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칭은 관할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제8조(임대해지) (생략)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 2.~4. (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시장).....
.....
.....

(삭제)

제8조(임대해지) (현행과 같음)

(삭제)

1.~3.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